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안자 : 교육위원장

##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에 해당하므로 겸직 주체 중 위원장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은 임명되므로 겸직 허가권자 중 위촉권자를 삭제하며, 상임위원에 대한 겸직 허가 대상에서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직은 제외하고(안 제9조제2항), 부칙 중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위원장과 위촉권자는 삭제함(안 부칙 제2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수정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직은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안 부칙 제2조 중 “위원장과 상임위원에”를 “상임위원에”로,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를 “임명권자의”로 한다.



## 수정안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제9조(겸직금지 등)<br>① (생략)<br><u>&lt;신설&gt;</u> | 제9조(겸직금지 등)<br>① (현행과 같음)<br>② <u>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u><br><u>&lt;단서 신설&gt;</u>                                        | 제9조(겸직금지 등)<br>① (개정안과 같음)<br>② <u>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u><br>-----<br>----- <u>다만,</u><br><u>제1항 각 호의 직</u><br><u>은 겸하거나 업무</u><br><u>를 할 수 없다.</u>    |
| ②·③ (생략)                                   | ③·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br><b>부칙</b><br><u>제2조(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위원장과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u> | ③ · ④ (개정안과 같음)<br><b>부칙</b><br><u>제2조(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u><br>-----<br>-----<br><u>상임위원에-----</u><br><u>-----임명권자의</u><br>-----<br>-----<br>----- |

|  |                  |       |
|--|------------------|-------|
|  | <u>3개월 이내에 제</u> | ----- |
|  | <u>9조제2항의 개정</u> | ----- |
|  | <u>규정에 따라 겸</u>  | ----- |
|  | <u>직 허가를 다시</u>  | --.   |
|  | <u>받아야 한다.</u>   |       |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준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br>번호 | 13318 |
|----------|-------|

발의연월일 : 2025. 9. 26.

발 의 자 : 박성준 · 김용만 · 고민정  
윤종균 · 허성무 · 진선미  
박찬대 · 문정복 · 박상혁  
최혁진 · 김태선 · 정을호  
조계원 · 허 영 · 김승원  
박 정 · 이광희 · 장종태  
의원(18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무원법」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겸직금지 규정이 적용되므로 정무직공무원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의 겸직문제는 위촉권자인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해됨.

그런데 공무원 관계 법령에서 ‘소속 기관장’은 ‘임용제청권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현행법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은 국회의 추천 또는 대통령의 지명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용제청 절차나 임용제청권자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임용제청권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의 겸직허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위원장 등이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면서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 원안에 대한 수정사항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에 해당하므로 겸직 주체 중 위원장을 삭제하고, 상임위원은 임명되므로 겸직 허가권자 중 위촉권자를 삭제하며, 상임위원에 대한 겸직 허가 대상에서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직은 제외하고(안 제9조제2항), 부칙 중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에서 위원장과 위촉권자는 삭제함(안 부칙 제2조).

##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직은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직을 겸하고 있는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임명권자의 겸직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겸직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생   략)       | 제9조(겸직금지 등) ① (현행과<br>같음)                                                                      |
| <u>&lt;신   설&gt;</u>        | <u>② 상임위원은 임명권자의 허<br/>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br/>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직<br/>은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br/>다.</u> |
| <u>②</u> · <u>③</u> (생   략) | <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br>과 같음)                                                     |